# 이혼등

[수원지방법원 2009. 6. 17. 2008르1571(본소),2008르1588(반소)]



##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사건본인】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7. 31. 선고 2007드단1401(본소), 2007드단6819(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5. 27.

### 【주문】

## 

- 1. 제1심 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과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858,455,98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서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2013. 6. 1.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2015. 5. 31.까지, 사건본인 3에 대하여는 2021. 8. 21.까지 매월 각 700,000원씩을 지급하라.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858,455,98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서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2013. 6. 1.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2015. 5. 31.까지, 사건본인 3에 대하여는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8. 21.까지 매월 각 700,000원씩을 지급하라.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858,455,98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서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2013. 6. 1.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2015. 5. 31.까지, 사건본인 3에 대하여는 2021. 8. 21.까지 매월 각 700,000원씩을 지급하라.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858,455,98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서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2013. 6. 1.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2015. 5. 31.까지, 사건본인 3에 대하여는 2021. 8. 21.까지 매월 각 700,000원씩을 지급하라.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858,455,98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로서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2013. 6. 1.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2015. 5. 31.까지, 사건본인 3에 대하여는 2021. 8. 21.까지 매월 각 700,000원씩을 지급하라.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자료에 대한 이자지급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위자료에 대한 이자지급부분에 관한 판단

(5)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혼인파탄일 이후로서 이 사건 2007.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 판결 이유에서 "2007. 5.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7.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주문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다).

####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 형성의 경위

-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부친 소외 2로부터 물려받은 땅(광주시 오포읍 이하 지번 1 및 지번 2 생략)에서 건물을 지어 살면서 상추를 키우는 등 밭농사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1998년경부터는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까지 해 왔다.
- (2) 피고의 부친 망 소외 2(1983년 사망)에게는 장녀 소외 3, 입양한 장남 망 소외 4, 차남 피고, 삼남 소외 1이 있는데, 소외 2는 1969. 1. 24.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이하 지번 3 생략)전 1,094㎡를, 1970. 2. 16. 같은리 (지번 1 생략)답 1,074평(이하 '이 사건 합유토지'라 한다)을, 1974. 4. 1. 같은리 (지번 4 생략)대 50㎡를 각 매수하여 피고와 피고의 동생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를 마쳐주었고, 1969. 1. 24. 같은리 (지번 5 생략)답 2,377㎡와 같은리 (지번 2 생략)전 2,539㎡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 1의 공유(각 1/2지분)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3) 피고와 소외 1은 2003. 12. 29. 양벌리 (지번 5 생략) 토지를 소외 5에게 매도하였고, 2004. 6. 30. (이하 지번 2 생략) 전 2,539㎡를 (지번 2 생략) 전 1,216㎡(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지번 6 생략) 전 106㎡, (지번 7 생략) 전 1,217㎡로 분할하였으며, 2004. 7. 12.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각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이하 지번 2 생략)은 피고가, (이하 지번 7 생략)는 소외 1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2004. 8. 21. 소외 6에게 (지번 6 생략) 토지의각 공유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유토지와 (이하 지번 7 생략) 전에서 상추를 재배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피고는 1998년경이 사건 합유토지 위에 주택 1동과 창고 1동을 신축하여 2000.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신축비용 명목으로 오포농업협동조합(이하 '오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공동담보로 1997. 12. 27. 이 사건 합유토지에, 2001. 11. 16.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5) 이 사건 합유토지 지상에는 아르곤블럭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1층 주택(시가 49,756,590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1층 창고(시가 24,882,000원), 쇠파이프조 천막지붕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40.6㎡ (시가는 12,180,000원 이고, 피고의 사촌 동생이 거주 중이었으나 2009년 초 사촌동생을 내보내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쇠파이프조 천막지붕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20㎡(시가 36,000,000원),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시가 840,000원), 비닐하우스 3동(1동당 7,650,000원) 시가 합계 146,608,590원(= 주택 49,756,590원 + 창고 24,882,000원 + 주택 12,180,000원 + 주택 36,000,000원 + 창고 840,000원 + 비닐하우스 3동 22,950,000원) 상당이 설치되어 있다.
- (6) 피고는 2004. 8. 20. 이 사건 공유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고, 2004. 8. 21. (이하 지번 6 생략)을 매각한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정리한 다음 오포농협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공유토지 지상에 2동의 창고를 지어 2004. 8.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그 중 1동의 창고를 소외 7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오포농협은 이 사건 공유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4. 8. 21. 채권최고액 98,000,000원(실대출금 7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006. 7. 13. 채권최고액 14,000,000원(최초대출금은 9,960,000원이었으나 2007. 10. 4. 그 중 1,430,000원을 변제하여 대출잔액은 8,530,000원이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006. 10. 19.(다만,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달 26일) 채권최고액 42,000,000원(실대출금은 45,000,000원, 다만, 오포농협은 위 2004. 8. 21.자 대출금과 합하여 1억원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었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 (7)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8. 9. 10. 이 사건 공유토지 및 지상 건물을 7억 원에 매도하였다.
- (8) 피고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1997년 오포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영농자금을 매년 대환처리하여 현재 9,000,000원이 남아 있고, 2001년경 오포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영농자금을 매년 대환처리하여 현재 36,000,000원이 남아있으며, 2004. 4. 23. 생활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11,699,522원이 남아 있다.
- (9)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유토지 이외에도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26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원고는 신한은행에서 대출금 6,000,000원을, 엘지카드에서 현금서비스 2,500,000원을 각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1. 인용부분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자료에 대한 이자지급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위자료에 대한 이자지급부분에 관한 판단
- (5)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혼인파탄일 이후로서 이 사건 2007.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 판결 이유에서 "2007. 5.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7.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주문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다).
-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 형성의 경위

-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부친 소외 2로부터 물려받은 땅(광주시 오포읍 이하 지번 1 및 지번 2 생략)에서 건물을 지어 살면서 상추를 키우는 등 밭농사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1998년경부터는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까지 해 왔다.
- (2) 피고의 부친 망 소외 2(1983년 사망)에게는 장녀 소외 3, 입양한 장남 망 소외 4, 차남 피고, 삼남 소외 1이 있는데, 소외 2는 1969. 1. 24.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이하 지번 3 생략)전 1,094㎡를, 1970. 2. 16. 같은리 (지번 1 생략)답 1,074평(이하 '이 사건 합유토지'라 한다)을, 1974. 4. 1. 같은리 (지번 4 생략)대 50㎡를 각 매수하여 피고와 피고의 동생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를 마쳐주었고, 1969. 1. 24. 같은리 (지번 5 생략)답 2,377㎡와 같은리 (지번 2 생략)전 2,539㎡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 1의 공유(각 1/2지분)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 (3) 피고와 소외 1은 2003. 12. 29. 양벌리 (지번 5 생략) 토지를 소외 5에게 매도하였고, 2004. 6. 30. (이하 지번 2 생략) 전 2,539㎡를 (지번 2 생략) 전 1,216㎡(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지번 6 생략) 전 106㎡, (지번 7 생략) 전 1,217㎡로 분할하였으며, 2004. 7. 12.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각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이하 지번 2 생략)은 피고가, (이하 지번 7 생략)는 소외 1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2004. 8. 21. 소외 6에게 (지번 6 생략) 토지의각 공유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유토지와 (이하 지번 7 생략) 전에서 상추를 재배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피고는 1998년경이 사건 합유토지 위에 주택 1동과 창고 1동을 신축하여 2000.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신축비용 명목으로 오포농업협동조합(이하 '오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공동담보로 1997. 12. 27. 이 사건 합유토지에, 2001. 11. 16.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5) 이 사건 합유토지 지상에는 아르곤블럭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1층 주택(시가 49,756,590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1층 창고(시가 24,882,000원), 쇠파이프조 천막지붕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40.6㎡ (시가는 12,180,000원 이고, 피고의 사촌 동생이 거주 중이었으나 2009년 초 사촌동생을 내보내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쇠파이프조 천막지붕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20㎡(시가 36,000,000원),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시가 840,000원), 비닐하우스 3동(1동당 7,650,000원) 시가 합계 146,608,590원(= 주택 49,756,590원 + 창고 24,882,000원 + 주택 12,180,000원 + 주택 36,000,000원 + 창고 840,000원 + 비닐하우스 3동 22,950,000원) 상당이 설치되어 있다.
- (6) 피고는 2004. 8. 20. 이 사건 공유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고, 2004. 8. 21. (이하 지번 6 생략)을 매각한 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정리한 다음 오포농협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공유토지 지상에 2동의 창고를 지어 2004. 8.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중 1동의 창고를 소외 7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오포농협은 이 사건 공유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4. 8. 21. 채권최고액 98,000,000원(실대출금 7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006. 7. 13. 채권최고액 14,000,000원(최초대출금은 9,960,000원이었으나 2007. 10. 4. 그 중 1,430,000원을 변제하여 대출잔액은 8,530,000원이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006. 10. 19.(다만,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달 26일) 채권최고액 42,000,000원(실대출금은 45,000,000원, 다만, 오포농협은 위 2004. 8. 21.자 대출금과 합하여 1억원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었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 (7)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8. 9. 10. 이 사건 공유토지 및 지상 건물을 7억 원에 매도하였다.
- (8) 피고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1997년 오포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영농자금을 매년 대환처리하여 현재 9,000,000원이 남아 있고, 2001년경 오포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영농자금을 매년 대환처리하여 현재 36,000,000원이 남아있으며, 2004. 4. 23. 생활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11,699,522원이 남아 있다.
- (9)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유토지 이외에도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26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 (10) 원고는 신한은행에서 대출금 6,000,000원을, 엘지카드에서 현금서비스 2,500,000원을 각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